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23일 평창군수 제출
- 나.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6일
- 다. 상정일자 : 제242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2월 10일) 상정
 -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12월 11일)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가. 제안이유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군민 중심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추가경정 예산편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6,456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67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865백만원이 증액된 413,041백만원, 특별회계는 1,190백만원이 감액된 43,415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17백만원, 지방교부세 1,000백만원, 조정교부금 3,150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309백만원,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42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43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3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20백만원 임.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9,914백만원, 재무활동 △73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17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1,751백만원, 재무활동 70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42백만원 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검토결과 】

가. 예산안 총규모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6,45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1%인 7,676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413,042백만원으로 8,865백만원(2.19%)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43,415백만원으로 1,190백만원(△2.67%)이 감액 편성되었음.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9%인 8,865백만원이 증액된 413,042백만원 임.
- 자체수입은 41,610백만원으로,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 152백만원 증가와 기타 그 외수입 169백만원감소로 17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이전수입은 343,671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00백만원, 조정교부금 3,150백만원, 보조금 3,30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7,760백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전입금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1,42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9%인 8,865백만원이 증액된 413,042백만원 임.

- ▶ 정책사업비 9,914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재무활동 732백만원, 행정운영경비 317백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분야 74,407백만원(18.01%)

사회복지분야 59,977백만원(14.52%)

문화및관광분야 55,300백만원(13.39%)

국토및지역개발분야 53,956백만원(13.06%)순으로 배분되었음.

○ 조직별 세출예산은

안전건설과 58,622백만원(14.19%)

자치행정과 55,188백만원(13.36%)

주민복지과 53,675백만원(13.00%)

농업기술센터 48,001백만원(11.62%) 순으로 배분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78,552백만원(43.23%)

경상이전비 108,674백만원(26.31%)

인건비 48,784백만원(11.81%)

물건비 31,185백만원(7.55%) 순으로 배분되었음.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8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3,41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90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53백만원이 증액된 23,940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81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4백만원,
 -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590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227백만원,
 -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6,35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500백만원,
 -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1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백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마. 계속비 사업

-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계속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21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건으로 당초 8,800백만원에서 9,200백만원으로 400백만원이 증액되었음.

바. 명시이월사업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비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148건에 53,820백만원이며,
- 사유별로 보면 절대공기 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승인지연 등 임.
 - ※ 명시이월사업 현황 : 【표1】 참조

사. 종합검토의견

○ 세출예산안 중

-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예산 편성이 대부분이나, 자체예산으로 계상하는 신규 사업도 편성되어 있음.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편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함.

※ 주요사업(1억원이상 증액) 현황 : 【표2】 참조

- ▶ 제3회 추경에 계상된 국·도비 반환금은 1,489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국·도비 반환금 (1억 이상)>

소 관 부 서	사 업 명	반환금 (백만원)	비 고
계	3건	609	
문화관광과	2017 문화재보수정비 국비집행잔액 반납	206	p140
“	2015년 노람뜰 녹색치유&레포츠단지조성사업 국고보조금반납	263	p140
농 축 산 과	하진부2리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 국고보조금(2015년)반납	140	p242

- 본예산 및 1회, 2회추경에 예산편성 후 3회추경 예산안에 전액 삭감하는 사업은 24개사업 2,862백만원으로 다양한 사유가 있겠으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됨.

※ 전액(100%)삭감사업 현황 : 【표3】 참조

- 이 밖에 본 추경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표1】 명시이월사업 현황(특별회계포함)

(단위:백만원)

구 분	건수	3회추경안	명시이월액	비율(%)	비고
합 계	148	456,456	53,820	11.79	
기 획 감 사 실	0	28,282	0	0.00	
올림픽기념사업단	3	2,896	998	34.46	
문 화 관 광 과	38	36,065	6,329	17.55	
주 민 복 지 과	4	54,057	1,197	2.21	
중 합 민 원 과	1	1,733	23	1.33	
허 가 과	0	143	0	0.00	
자 치 행 정 과	7	55,188	1,744	3.16	
재 무 과	1	3,872	40	1.03	
일 자 리 경 제 과	5	8,211	1,380	16.81	
교 육 체 육 과	0	7,633	0	0.00	
환 경 위 생 과	3	37,026	253	0.68	
산 림 과	4	16,258	1,162	7.15	
안 전 건 설 과	27	58,622	10,864	18.53	
도 시 주 택 과	9	33,721	10,364	30.73	
시 설 관 리 과	10	11,979	8,231	68.71	
보 건 의 료 원	0	11,676	0	0.00	
농 업 기 술 센 터	24	48,001	4,176	8.70	
의 회 사 무 과	0	951	0	0.00	
상하수도사업소	12	33,811	7,059	20.88	
읍 면	0	6,331	0	0.00	

【표2】 주요사업(1억 원 이상 증액)현황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재원	비고
		3회추경	기정	증감		
합 계	27개 사업	32,276	18,686	13,590		
올림픽기념사업단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행사	500	0	500	교부금	p133
	올림픽 성공기념 평화 대축제	200	0	200	자체	p133
문화관광과	드라마 이몽 제작지원비	100	0	100	도비	p137
	월정사 전시관 주변 정비사업	1,000	0	1,000	자체	p138
	평창향교 사무관리동 신축	200	0	200	자체	p138
	수석전시관 건립공사 물가상승 반영	350	0	350	자체	p139
	방림글램핑장 조성 부지매입	1,403	0	1,403	자체	p139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 지역정착지원사업	238	114	124	국도비	p182
안전건설과	설해대비 부착제설기 보급	135	0	135	자체	p201
	2018년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584	90	494	도비	p202
	평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3,312	2,328	984	국비	p203
	홍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	6,755	4,890	1,865	국도비	p203
	관정개발 및 보수	186	0	186	국비	p204
	진부면 수항리 도로 사면정비	300	0	300	특교세	p204
도시주택과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	1,524	1,062	462	도비	p210
보건사업과	평창군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2,785	2,635	150	자체	p221
농축산과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600	0	600	도비	p231
	기업형 새농촌 선도마을 지원	200	0	200	도비	p231
	저장시설 신축 및 제조 가공시설 확보	960	0	960	균특	p232
	신활력사업추진단 운영 및 통합형 홍보 및 마케팅	150	0	150	균특	p233
	기능성 상품생산 기반 구축	470	0	470	균특	p233
	혁신체계 구축 및 마케팅	508	254	254	균특	p234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300	0	300	국도비	p240
유통원예과	폭염 및 가뭄대책 지원	138	0	138	도비	p239
	고랭지채소 주산지 토양복원 지원	765	0	765	도비	p241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1,000	450	550	도비	p241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7,613	6,863	750	자체	p342

【표3】 전액(100%) 삭감사업 현황

소관부서	사 업 명	삭감액 (천원)	비 고
합 계	24개 사업	2,861,775	
문화관광과	올림픽 문화행사 참여 실비보상	5,000	본예산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지원	5,000	2회추경
	불법게임장 단속 관련 압수품 운송비	3,000	2회추경
주민복지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120	본예산
	노인일자리사업 벤치마킹 및 사업추진여비	1,000	2회추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사업추진비	4,000	2회추경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장비구입 지원	15,000	2회추경
종합민원과	행정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보상	500	본예산
자치행정과	대표 홈페이지 구축 원가계산 용역	3,000	1회추경
	커뮤니티센터 매입	400,000	2회추경
재무과	공공요금 및 제세	500	본예산
	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1,873,295	2회추경
	대관령면사무소 청사부지 임차료	2,000	본예산
일자리경제과	방과후 보육돌봄 청년맘 운영	124,500	2회추경
교육체육과	평생학습박람회 부스운영	10,000	본예산
	공공요금 및 제세	6,000	본예산
환경위생과	야생화 생태단지 준공식	6,000	2회추경
	쓰레기 불법투기 및 빈병회수 거부 소매점 신고포상금	3,000	본예산
도시주택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대지)매수청구	100,000	본예산
	택시감차 지원	27,300	본예산
보건사업과	평창군 노인요양원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150,000	2회추경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비	2,560	본예산
유통원예과	고랭지무,배추안정생산시범	15,000	본예산
	사과 명품과원 조성지원	105,000	본예산

※ 예산의결일 : 본예산(2017.12.18), 1회추경(2018. 4.12), 2회추경(2018. 8.1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음

【붙임1】 2018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결조서 1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의 결 조 서

1. 예산총칙

- 제1조 :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56,456,647	13,693,699
일반회계		413,041,647	12,391,249
특별회계		43,415,000	1,338,137
공기업특별회계		23,939,520	718,186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939,520	718,186
기타특별회계		19,475,480	584,264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81,491	11,445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590,357	47,7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9,553	4,487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78,175	20,345
수질개선특별회계		16,357,815	490,734
주택사업특별회계		318,089	9,543

-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 제4조 :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 : 201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 제6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3,941,261천원으로 한다.
- 제7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8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9조 : 금회 추경후 연말까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2. 예산의결 내역

가. 일반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원안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예산 : 원안가결
- 세출예산 : 원안가결

3.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사업 : 원안가결

5. 명시이월사업 : 원안가결